

『2021 화성시 정조 효 문화제』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

I. 과업개요

1. 과업명 : 「2021 화성시 정조 효 문화제」 대행 용역
2. 기간 : 계약체결일 ~ 2021. 05. 31 ※ 행사일자 : 2021.04.24(토) ~ 04.25(일)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3조(대규모 재난의 범위) 법 제1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" 발생, 상황 지속 시 행사 기간(시작, 종료일)은 늦추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 완료일도 연장될 수 있음. (예 : 코로나-19사태의 지속)

3. 개최장소 : 용·건릉 內 및 화성시 일원
4. 행사장 활용 계획

연번	장 소	활용계획	활 용	비고
1	용릉광장	메인행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제공연 제작, 초청공연 및 시민참여 공연 • 정조 전시주제관 조성 • 조선시대 왕실문화, 효 문화 체험행사 • 시민 격쟁 상담방 • 행사장 설치미술 및 관람객 쉼터조성 등 	
2	야외체험부스	음식체험부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선시대 생과방(生果房) : 다식, 약과 등 판매운영 • 천장, 능행차 행렬 임시거점 	
3	재실	대기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요내빈 대기실 및 환복소 활용 	
4	용릉	용릉제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가행렬 및 현릉원 공원의 제향(황사손 이원 참여) • 해설사와 함께하는 용·건릉 역사탐방 • 봉심의 체험 	
5	건릉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설사와 함께하는 용·건릉 역사탐방 	
6	용·건릉 공영주차장	임시주차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용·건릉 대형버스 임시주차장 • 주요내빈 및 행사관계자, 일반관람객 주차장 	
-	화성시 일원	영우원 천장 재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하는 국장 퍼포먼스 만년제 → 야외체험부스 → 용릉 (2.1km) 	
		정조대왕 능행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조대왕 능행차 3개 지자체 공동재현 대황교동 → 화성 현충공원 → 용릉 	

※상기 내용은 문화재청 서부지구 용·건릉 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변경 될 수 있음

○ 용·건릉 현황도 (참고)



○ 영우원 천장 재현 코스 (참고)



4. 주요내용 : 영우원 천장 재현, 어가행렬 및 현릉원 공원의 제향, 용·건릉 역사탐방, 정조 전시 주제관, 주제공연, 조선시대 왕실체험 및 조선시대 생과방(生果房) 등 정조와 효 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 축제

5. 과업예산 : 금818,000,000원 (금팔억천팔백만원/부가세, 대행료 등 일체 포함)

6. 추진방향

- 가.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‘조선왕릉-용릉’ 內 행사 개최로 정조대왕의 도시 화성시의 도시 이미지 확립, 동기간 개최 유사축제와의 차별화
- 나. 영우원 천장 재현 등 우리 시에서만 추진 가능한 콘텐츠 및 축제 메인 주제공연 제작으로 예술과 문화의 도시 화성시 이미지 강화
- 다.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해 개최되는 축제에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만드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강화로 경기도 대표 역사문화제로의 발돋움

7. 과업범위 : ‘2021 화성시 정조 효 문화제’ 기획, 운영, 홍보에 관한 모든 사항

유의사항

본 행사는 「2021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(화성구간)」 과 연계되는 행사로 선정업체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「2021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(화성구간)」 운영대행사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.

- 가. 「2021 화성시 정조 효 문화제」의 기획, 운영, 홍보 등 축제 시작과 종료에 관한 모든 사항
 - 축제의 취지와 목적, 장소를 고려한 컨셉 및 기본·세부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 제시
- 나. 프로그램 및 콘텐츠 구성
 - 사업 목적 및 용릉 내부와 주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 제안 및 실행
 - 전시, 체험, 재현, 주제공연,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
- 다. 인력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
 - 축제 내 시민참여에 대한 계획 수립, 모집, 운영 등 일체
 - 사전 준비에서부터 축제 종료까지의 모든 인력 선발 및 운영(스텝, 시민참여자, 안전요원, 수어통역, 전문 해설사, 시민사회자, 시민축제기획단 운영 등, 발주처 직접 추진 프로그램 운영 포함)
- 라. 현장조성 등 관객 편의시설과 시스템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

- 축제 운영을 위한 모든 시설(편의시설, 프로그램, 시설) 및 시스템 일체
 - 무대, 음향, 조명, 영상, 중계, 발전차 등 운반·관리·유지·철거·보수·안전관리 등
 - 마. 축제 전반의 홍보, 홈페이지 개설 및 축제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사진·영상
 - 교통통제에 따른 사전 안내 홍보물 제작, 배포, 설치 운영 등
 - ‘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(화성구간)’ 홍보 포함, 통합 및 개별 홍보 진행
 - 바. 행사 추진 관련 유관기관 및 관계기관 과의 업무협약, 간담회 진행
 - 문화재청 서부지구 용·건릉 관리사무소, 자원봉사센터, 교통관련협약 등
 - 사. 관람객 및 출연자 상해보험 가입·사후처리 일체, 안전요원 배치 등 현장 안전 책임
 - 우천, 전염병 등 참여인력 및 관람객 보호 안전관리대책, 방역대책 수립
 - 아. 축제 예산 집행 및 정산내역서(회계사 검수 필) 등 회계처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
 - 자. 과업의 일반지침 및 기타
 - 과업 수행, 보고 및 업무협약, 책임, 보안, 정산 등 최종 결과물 제출까지의 모든 업무 일체
 - 차. 기타 축제 준비, 진행과 관련하여 화성시 및 화성시문화재단(발주처)가 지정하는 사항 등
- ※ 상기 과업 범위 외에도 행사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운영사의 과업으로 간주하며, 세부 내용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

8. 과업의 세부사항

구 분	내 용
<p>기획 및 기본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사의 취지와 목적, 행사장소의 특징을 고려한 전체 컨셉 및 조성, 운영 계획 수립 - 행사의 주제 및 슬로건, 기획에 맞는 메인디자인 제시 -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이며 세부적인 예산계획 수립, 집행내역 보고 - 모든 재현행사는 역사가 기반이 된 고증을 바탕으로 하되 현대적 재해석 진행이 가능 - 행사 전반에 필요한 모든 보고 및 문서작업 일체 (해설문, 배치도, 큐시트 등) - 화성시민의 참여와 즐거움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인공이 되도록 기획운영 - 총감독 선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, 협의되지 않은 총감독은 예산인정 불가 - 천재지변, 불가항력, 자연재해, 전염병 등으로 중앙 또는 지자체의 행사 축소 지침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지출은 인정하지 않음
<p>프로그램</p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사전행사 : 역사 토크 콘서트, 시민축제기획단 등 부업 프로그램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역사토크콘서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사의 사전 홍보 및 부업을 위해 융·건릉과 정조대왕에 얽힌 역사토크콘서트 - 주제선정, 출연진 섭외(A급 역사전문가 및 진행자), 관객모객 방안 등 기획운영 - 역사토크콘서트는 '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'의 학술대회와 같은 날 진행 ◎ 시민축제기획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화성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축제기획단 기획·모집·운영 (사전홍보, 현장 운영 등 축제참여) ◎ 정조 빛으로 만나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빛 조형물을 제작 및 설치, 이를 활용한 사전 홍보 방안 제시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무대행사 : 주제공연 제작 및 초청공연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조대왕과孝 등 축제의 주제를 표현하는 주제공연 제안 (형식, 장르 제한 없음) - 관내 예술단체 공연, 전통공연 등 무대 공연 프로그램 제안 - 융·건릉 행사 진행 시 중계 및 관람객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을 진행하며, 전문 해설사 및 아나운서 제안 (시나리오, 큐시트 작업 포함) - 전문공연, 전문사회자 및 시민 공연팀의 참여와 화성시 시민사회자 모집·운영·교육 방안 제안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재현행사 : 영우원 천장 재현 ★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우원 천장의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로 명확한 스토리텔링, 프로그램 의도를 제시하여 '정조대왕 능행차'와 구분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 운영 - 역사적 행렬 재현을 기본으로 하되 현대적 재해석을 가미한 행렬 및 시민참여에 중점을 둔 특화 역사문화 콘텐츠 제안 ★ - 재현구간은 '만년제 ~ 야외체험부스 ~ 융·건릉' 으로 제안하며 시작지점과 중간 거점의 거리퍼레이드 연출방안 제시

구 분	내 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사에 적합한 행렬을 구성하여 제안하되 시민참여를 기본으로 하며 주요 역할을 포함한 시민 행렬단 모집 운영(400명 이상, 복식 기물 필수 운영) -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물에 대해서는 보완 사용하며 필요시 제안사에서 제안한 기물로 대체 운영 가능(보유제작물 : 방상시 수레, 견여, 죽산마2, 죽안마2)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재현행사 : 어가행렬 및 현릉원 궁원의 제향 재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향은 1795년 실제 제향의 모습을 바탕으로 재현하나 제향 종료 후 퍼포먼스와 공연이 가미된 현대적 재해석 제안 ★ -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 제향 진행. 종료 후 시민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(ex. 음복 나눔, 시민참배 등) - 행렬은 300명 이상으로 구성. 세부 구성·운영과 관련하여 ‘정조대왕 능행차(화성구간)’ 제안사와 협의 진행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공식행사 : 화성시 축제 시즌제 선언 및 주요인사, 시민참여 퍼포먼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화성시 축제 시즌제 선언에 따른 퍼포먼스 예산수립 및 운영방안 제안 - 축제 시즌제 선언은 능행차 공동재현의 격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협의 진행 - 재현행사와 연계한 주요 내빈 참여 퍼포먼스 기획 운영. 소품, 복식 일체 운영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상설프로그램 : 주제전시관, 왕실문화체험, 음식프로그램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주제전시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면적인 전시는 지양, 정조가 꿈꾼 화성의 미래 등 축제의 주제를 보여줄 수 있는 주제 전시 제안 ◎ 왕실문화체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획일적 체험프로그램은 지양하며 스토리텔링이나 재해석이 가미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안 (조선왕실체험, 왕릉문화학교, 격쟁상당소, 젊은 이산 찾기 등) ◎ 음식프로그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선시대 음식 체험 및 전시 제안 - 용릉 內 음식프로그램 진행 불가로 운영 가능한 주변 장소 제안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비대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축제 운영 방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염병 등 재난 상황 지속에 따른 비대면 축제로의 전환 시, 진행 가능한 대체 프로그램 제시 및 운영 방안 (별도 예산 제시) </div>

구 분	내 용
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천장재현 : 시민행렬단 참여 모집 계획 수립, 주요 배역(정조) 시민공모, 교육·운영 등 -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문 인력 섭외 및 운영(구성작가, 분장, 취타대 등) - 제안 프로그램과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장 전체 충분한 인원의 스텝 배치·운영 - 출연자 및 시민참가자 모집, 운영, 수송 계획 수립 및 운영 - 각 과업 분야별 담당자 지정 및 해당분야 경력 제시 - 이밖에 행사의 세부계획에 따른 사전 준비에서 행사 종료까지의 인력 및 운영 (교통, 주차, 경비, 미화, 안전요원, 야간경호경비 등)
조성·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용·건릉 內 행사개최로 문화재 보호에 대한 특별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운영 ★★ - 주 행사장을 비롯한 용·건릉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관리 운영 (안내소, 유아휴게실, 관람객 쉼터, 임시화장실 등) - 행사장소를 고려한 공간조성 및 부스설치 및 운영방법 제안 ★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장소와 어울리는 설치미술 및 공간 활용 방법제안 (용릉광장 內 나무 다수) ▶ 용·건릉 內 다양한 공간 활용한 제안 (곤신지, 건릉, 산책로, 재실 등) - 행사장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 제거 및 행사종료 후 원상복구 진행 등 - 주차안내 및 교통통제 계획방안 - 관람객 편의 위한 주차장 조성 및 운영방안, 일반관람객 대상 셔틀버스 운영방안 - 행사 투입 인력(스텝, 도우미 등)은 업무 및 안전관련 사전 교육 후 배치·관리 - 행사 투입 인력의 적정 의상 및 유니폼 운영 -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 업무협약 및 관리 운영 - 행사 전, 행사 중, 행사 후, 환경정비 및 파손·변상에 대한 원상복구 진행 - 행사개최 1개월 전 현장사무국 개설 운영 및 상주인력 배치로 업무진행 필수 - 비상상황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인력, 물품 적정 배치 - 행사 진행 일체에 대한 보험가입 및 운영 (사전행사, 대인대물, 구내치료비 가입필수, 자기부담금 운영사 부담) -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계획 제출 운영 (관련법규, 조례 준수하여 계획 수립운영. 안전대책 미흡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운영사 책임) - 위생관리 및 전염병, 집단감염 등에 대한 안전관리, 방역 및 기본지침 수립 ★★ (‘행안부: 코로나19 확산방지 정부 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’에 따라 방역담당관 지정 운영 및 행사요원 보건교육 실시) - 기상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현장 운영 - 참여자 및 스텝에 대한 도시락, 간식, 식수 등 제공 운영 - 행사 전 후 청소계획 수립 및 운영 - 그밖에 행사 조성 운영을 위한 모든 업무 일체(콜센터, 환복소, 대기장소 운영 등)

구 분	내 용
시설.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체 행사장 구성 및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운영(만년제 포함) - 메인무대 설치 및 무대 시스템 장비일체 구성 운영 (행사장소와 적합한 무대, 객석, 시스템 규모로 제안) - 행사운영을 위한 모든 시설(편의시설, 프로그램 시설 등) 및 시스템 일체 (ex. 무대, 음향, 조명, 영상, 중계, 발전차, 인터넷 등 의 운반.관리.유지.철거 등) - 재현프로그램 및 용릉 내 행사 진행 시 중계 및 이에 따른 장비 일체 (천장 재현 직접 중계, 능행차 공동재현 중계 시 협의 진행) - 그 외 운영사가 제안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, 시스템 일체 - 행사장 현장 안내 및 행사를 위한 인근지역 표지판, 현수막 등 제작 운영 - 모든 물품과 시설은 청결을 유지 운영
홍보	<p style="color: red; font-weight: bold;">★ 홍보는 ‘정조 효 문화제’ 및 ‘정조대왕 능행차(화성구간)’에 대한 전체 홍보를 포함. 이에 ‘정조대왕 능행차(화성구간)’의 대행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필요시 ‘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’의 3개 지자체와의 협의 운영 또한 진행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홍보 과업은 ‘정조 효 문화제’와 ‘정조대왕 능행차(화성구간)’의 전 내용 및 축제에서 출력되는 모든 출력물을 의미 - 진행 시 정조 효 문화제와 능행차의 통합 홍보 및 개별홍보를 진행하며 오프라인 홍보 물과 인쇄홍보물의 경우 전체 수량에서 적절하게 조절하여 운영 - ‘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’ 홍보와 관련하여 관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공동 홍보,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예산 절감 방안을 수립 운영 - 디자이너 1인 별도 운영하며 행사에 필요한 모든 디자인 일체 제작 운영 - 행사에 맞는 홍보전략 및 시기별, 단계별 효과적 홍보계획 수립 운영 - 온라인, 오프라인, 언론, 사전영상제작, 현장 사진 및 영상촬영제작, 초청장, 교통통제, 통합리플렛 제작, 사전홍보 등 홍보일체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효과적 운영 - 전국단위 홍보 및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 계획 수립 운영 - 그 외 행사 진행에 필요한 모든 홍보 운영 (차량통제, 시민모집 안내 등) - 시민참가자 및 참여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기념품 개발, 제작 운영 - 행사진행에 필요한 안내보드 및 기타 안내물 등 제작 (안내보드, 가이드북, 비표, 백서 등)
과업의 일반지침 및 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업 수행, 보고 및 업무협의, 책임, 보안, 정산 등 최종 결과물 제출까지의 모든 업무 - 그 외 발주처가 요청하는 내용 - 행사 추진 시 관내업체 사용 권장

II.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 사항

- 사업과정에서 진행되는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 선정업체(이하 “계약상대자”)가 책임을 진다
 - 감독선임, 출연진 섭외 운영, 재현행사 등 프로그램 출연진 운영, 안전관리 및 참가자 운영 관리, 홍보 및 회계처리 등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해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사항
- 행사개최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,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
-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후,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과업진행사항 보고를 하여야 함
-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는 항목의 제비용은 사후 정산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, 정산 후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결과에 따라 처리함
- 과업의 수행은 발주기관과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 하여야 하며, 발주기관에서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
-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제작한 일체 자료의 디자인 및 내용의 판권과 저작권 일체는 발주기관에 있으며, 용역업체는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

III. 과업수행 지침

가.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

-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,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제출서류는 주최 측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공모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
-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,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나. 운영단체 선정에 따른 계약 일반사항

-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,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 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
- 계약체결 후 “계약상대자”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(보고)하고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함

-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책임 및 행정적,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 상대방이 부담함
-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818백만원 이내로 하고, 제세(부가세 등), 대행수수료(기획료 포함), 연출진 용역비, 공연팀 출연료, 임차료, 인건비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제반 경비를 모두 포함해야 함
 - 최종 사업비는 행사 종료 후 정산 완료시 지급

다. 사업의 시행

- “계약상대자”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본 “행사”를 시행함
- “계약상대자”는 “행사”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“발주기관”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률 저촉 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
- “계약상대자”는 “행사”를 실시함에 있어 출연진 및 관람객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,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음
- “발주기관”은 “계약상대자”의 “행사”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“행사”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
- 날씨,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“행사”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의 협의에 의하여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
- “계약상대자”는 “행사”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연진, 관계자 및 관람객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(무대 등)을 완벽하게 설치하고,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(행사안전보험 가입 의무)
-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“행사”가 TV, 라디오, 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

라. 발주기관 지도·감독

- “발주기관”은 이 “행사”와 관련한 “계약상대자”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함
- “발주기관”은 필요한 경우에 “행사”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“계약상대자”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,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따라야 함
- “발주기관”은 “행사”와 관련한 “계약상대자”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

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

마. 손해배상

- “계약상대자”는 이 “행사”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 다만, “계약상대자”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의 입증증명은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있음
- “계약상대자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“발주기관”이 제 3자에게 이 “행사”와 관련된 손해 배상 등을 한 때에는 “계약상대자”는 이를 “발주기관”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

바. 계약의 해지 등

- “발주기관”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,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“발주기관”의 손해(신뢰실추, 손해배상 등)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
 - “계약상대자”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
 - “계약상대자”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“발주기관”이 인정하였을 경우
 - “발주기관”의 사전승인 없이 “계약상대자”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
 -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해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 - 선정된 업체(단체)가 계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(단체)와 협약을 체결함
- “발주기관”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기관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“발주기관”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
 - 천재지변,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경우로 취소되거나 “발주기관”이 공익상 정책결정에 의하여 행사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
 - 위 내용에 따라 행사 취소 시 “발주기관”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지출은 정산 및 지급하지 아니함

사. 사업비정산 등 회계처리

- “발주기관”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개산급으로 지급하되, “계약상대자”의 청구에 의하여 선급금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. 잔여 사업비는 사업이 완료되고 선급 정산이 완료 된 후 지급하며 “발주기관”은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음(지급하지 않음)
-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청구시 “발주기관”을 피보험자로 하는 「이행보증보험증권」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(단, 보험료는 “계약상대자”의 자체예산으로 부담)
- “계약상대자”는 사업비를 “발주기관”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, 인건비(출연료 등)는 타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함
- “계약상대자”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,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, 법인신용카드, 은행입금증(무통장입금)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음
- “계약상대자”는 출연료 등 인건비 지출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(납부)하여야 함
-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기관”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상근직원의 인건비,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

아. 결과물 및 정산서 제출

-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기관”이 요청하는 과업추진 자료(계획서, 세부추진계획서, 운영 및 인력계획, 예산자료 등 일체) 및 성과품(외장하드 제출 : 결과보고서, 사업기록, 사진 및 영상자료-클린본 포함-), 정산서를 2021. 05. 20일까지 “발주기관”에 제출해야 함
- 결과보고서는 분야별 추진과정, 진행내용 및 사진자료를 포함한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며 10부를 제출함
- “계약상대자”는 지출증빙 일체를 포함하여, 공인회계사의 정산검증을 필한 정산서 3부를 “발주기관”에 제출해야 함

자. 기타사항

-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 및 고증을 위해 구성된 ‘자문위원회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, 행사 기획과 관련된 자료를 “발주기관”에 성실히 제공하여야 함
-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

-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“발주기관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
-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가 협의하여 정함
-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,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

차. 특 약

-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본 행사의 “계약상대자”는 ‘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(화성구간)’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며 적극 협력해야 함
- 제안요청서의 “서약서”와 같이 사업일체를 수수료만 취하고 재하도급 하는 경우, 동 “행사”에 따른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
- 자금의 지출은 수급계획에 의거하여 지급함
- 본 특약은 본문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